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8 선고 2018가단52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결 2018. 7. 11

판 결선고 2018.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1,853㎡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5. 8. 26. 접수 제874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이 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05. 8. 26. E로부터 변제기를 2007. 2.

25.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D과 동서지간인 원고가 위차용금채무의 담보로 E의 處인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1,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8. 26.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따르면,E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7 . 2.25.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근저 당권설정 등기 가 담보하는 위 대여 금채 권은 소멸시 효가 완성 되 었다.

피고는,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D이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1, 2, 3, 5호증,을 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E가D에게 빌려준 1억 5, 000만 원은 F로부터 빌린 돈으로 E가 F에게 2005 . 11. 10.부터2010. 10. 1.까지 매월 100만 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D이 그 이후부터 2018. 4.11. 까지 매월 150만 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D이 2014 . 5. 까지 밀린 이자가3,000만 원에 달하자 2014. 5. 19. F에게 차용금 2,000만 원,변제기 2015. 3. 18.,이자 연 18%인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원고가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 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D이 표를 대신하여 2010. 10. 21.부터 2018. 4. 11.까지 F에게 직접 대여금채권의이자를 지급함으로써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로써 E의 D에 대한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그 결과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므로,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강규태